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- 66 호

공시송달(공고)

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'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,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' 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, 소유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1년 1월 19일

광진구청장 

1. 제 목: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,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(251-1○○)

2. 대 상

구 분	건축물 위치	건축주	위 반 내 용	반송사유
1	광진구 구의동 251-1○○	박 ○ 환	○ 지상1~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(고시원) 내 취사시설 설치하여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[※ 위반면적: 약567.06㎡]	주소불명 (환부불능)

3. 공고기간: 2021. 1.19.(화) ~ 2021. 2. 2.(화) (14일 이상)

4. 방 법: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'고시공고'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 (☎02-450-77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